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영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505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소영철, 경기문, 김태수,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영한, 임춘대,
황유정 의원(10명)

1. 제안이유

- 202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유통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및 테무(Temu)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에 불과하고, 협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C-커머스(China Commerce)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제품, 물리적 안전기준 미달 제품 등의 유통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유통되는 위해제품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다.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라.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마.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바.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라인 위해제품(危害製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중개”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온라인 위해제품”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
 -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따른 규격·품질 및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유통되는 제품
 -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통되는 위조상품

4. “사업자”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피해의 발생 현황, 사회적·제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제품명 및 모델명, 피해의 내용, 유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5년마다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구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및 피해의 발생 현황, 향후의 전망
3. 제5조에 따른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6.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7.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나 국공립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규격·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 요청 등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조사·검사 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 위해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2. 온라인 위해제품에 대한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3.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4.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창구 운영
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피해 구제 절차 연계 지원
6. 그 밖에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와 그에 따른 피해 발생 현황, 서울시의 예방·지원 시책에 따른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

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여부	판단 내용
1	제3조(시장의 책무)	×	[규정단일 미영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¹⁾ 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규정단일 미영향] 서울특별시 공장경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므로 별도 비용발생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3	제6조(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	○	[유사사례 토대 추계] 일부 사업의 경우 가추진하고 있으나, 시민감사단은 미운영하고 있어 관련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자체추계 하였음 ⇒ 총 27,775천원 소요예상(연평균 5,555천원 소요)
4	제7조(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	[통상적 사례 토대 추계] 실태조사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통상적 사례를 토대로 자체추계 하였음 ⇒ 총 138,890천원 소요예상(연평균 27,778천원 소요)
5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재정소요 영향 미미] 협력체계 구축 규정은 통상 비용 수반요인 ²⁾ 이 없거나 있더라도 영향이 미미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그 외 규정의 경우 별도의 비용수반요소가 없을 것으로 보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시민감사단 운영 사업비용(안 제6조)
- 실태조사 실시비용(안 제7조)

1) [노력의무규정 특성] 시장의 책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가령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함

2) [재정소요 영향 미미] 협력체계 구축(Ex. 업무협조 MOU)의 경우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일회성 소액지출인 경우가 많아 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Ex. 현수막, 입간판, 업무 협약서 제작 등)되므로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나. 전제

- (감시단)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 (인원) 인원은 서울시 유사사례를 토대로 1,000인을 가정³⁾
 - (임기) 1년 전제(매년 임명)
 - (소요항목) 위촉장 제작비용(1인 5,500원), 표창장 제작비용(연 10명, 1인 5,500원) 등⁴⁾
- (실태조사) 학술용역 단가 활용 및 유사 실태조사 사례⁵⁾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7,778천원 가정
 - (주기) 실시주기가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장상황 변화⁶⁾ 고려하여 매년 1회 실시를 임의로 가정
- (발생기간) 2027년부터 비용 발생, 매년 소요, 추계기간(2027~2031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예상
- (미고려) 향후 실제 사업추진 형태(현재 구체적 정책 미수립),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7년~2031년)

라. 방법

- (자체추계) 서울시 유사사업 및 통상적 실태조사 단가 등을 토대로 자체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총 166,665천원(연평균 33,333천원 × 5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시민감시단 운영 비용(안 제6조)	5,555	5,555	5,555	5,555	5,555	27,775
	○ 실태조사 실시 비용(안 제7조)	27,778	27,778	27,778	27,778	27,778	138,890
	소계(a)	33,333	33,333	33,333	33,333	33,333	166,665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3,333	33,333	33,333	33,333	33,333	166,665

4. 덧붙이는 의견

- [추계액 성격] 예시적·제안적 금액
 - 입법취지 및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해당 안은 선제적 입법⁷⁾이므로 구체적 정책수단, 집행 계획 등이 정해진 바 없어 서울시 유사사업 및 실태조사 단가관련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재정분석과 에서 정책 추진형태를 임의로 가정하여 자체추계하였음

3) [서울시 유사사업 고려]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측면에서 동일성이 있고, 불법 또는 위해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사업>을 고려하여 1,000명(통상적 인원고려)을 임의가정함

4) [관리용 플랫폼 구축 발생가능성] 데이터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관리용 플랫폼 구축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나, 시스템 구축 특성상 규모별 소요비용 차이가 크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현재로서는 객관적·합리적 추계가 곤란함

5) [중앙부처 유사 실태조사 고려]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17,800,000원, 조사 기간 2달 가량)를 실시한 바 있어 이를 고려함

6) [조사주기 일반적 특성 및 조사대상 변화추세 고려] 실태조사 주기는 통상적으로 별도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책적 필요에 의해 실시하고 있어 해당 사안별로 주기가 상이할 수 있으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시장상황이 급변한다는 점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어 매년 실시를 임의가정함

7) [예산마련 추가논의 필요]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입법조치이나,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수단 결정 및 이를 실현할 예산 마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추계액 활용유의] 대략적 규모 파악용 자료로 활용권장

-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시민감시단 운영방식, 실태조사 규모, 주기 등(다양한 지출결정요인)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주 무 관 손 제 승

☎ 02-2180-7935

e-mail : smclt22@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시민감시단 운영 사업비용(안 제6조)
- 실태조사 실시비용(안 제7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총 166,665천원(연평균 33,333천원 × 5년)

나. 연도별 소요비용 = 33,333천원

= ① 시민감시단 운영 + ② 실태조사 비용

= ① 5,500천원 + ② 27,778천원

① 시민감시단 운영 비용⁸⁾ = 5,555천원

- 위촉장 제작비용 = 5,500천원

= 1인 위촉장 제작비(P) × 감시단 인원(Q)

= 5,500원 × 1,000명

- 표창장 제작비용 = 55천원

= 1인 표창장 제작비(P) × 표창대상 인원(Q)

= 5,500원 × 10명⁹⁾

② 실태조사 비용 = 27,778천원

= 인건비 + 제본비 + 기타운영비

= (인력 전체 보수월액 합¹⁰⁾ × 3개월) + (제본단가 × 100부) + (기타 운영비)

= (8,626천원 × 3개월) + (10천원 × 100부) + (300천원 × 3개월)

= 25,878천원 + 1,000천원 + 900천원

8) [사업운영 방식 임의가정] 시민감시단 운영방식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위촉장 수여, 시장표창 수여, 봉사활동 시간 인증, 우수활동자 문화상품권 수여 등과 같은 통상적 방식 추진을 가정하였음

⇒ 우수활동자 문화상품권 지급은 보다 적극적인 감시활동 유인책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실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실시될 가능성이 있고 실적에 따라 소요비용 변동의 폭이 크므로 미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객관적·합리적 추계가 곤란함(따라서 향후 집행기관의 정책적결정 선행필요)

9) [유사사례 통상적 표창대상 인원고려]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해당사업을 시행할 당시 매년 표창대상인원이 달라지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10명의 정도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의가정함

10)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활용] 책임연구원(3,784천원) + 연구원(2,902천원) + 연구보조원(1,940천원) 지급 가정

※ 자료 :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